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 연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재해대처계획 수립시 안전관리사항 강화 및 지자체 의견청취 근거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무대설치 및 해체와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을 명시함(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수정)
- 나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공연장의 공연에 대한 신고의무 근거법인 공연법 조항을 제11조제3항에서 제11조제4항으로 변경함(시행령 제9조 제3항 공연법 근거조항 변경)
- 다.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관련 신고자가 필요한 경우 관할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청취 가능하도록 명시함(시행령 제9조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타 : 1) 입법예고(예정)
2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예정

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의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제1항제3호 ‘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’을 ‘무대설치·해체,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’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③ 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’를 ‘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’로 한다.

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 ④ 제3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	제9조(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)
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 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</u>	3. <u>무대설치·해체, 다중운집 등 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조치와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</u>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 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 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<u>법 제 11조제3항</u> 에 따라 해당 시설이 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 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 보·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 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	③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1 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한다.

<신 설>

---.

④ 제3항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769